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국장 김창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53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